

원주역 우미린 더스카이 | 특별공급 안내문

■ 특별공급 공통자격

※ 특별공급 신청은 한국부동산원 '청약Home'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앱을 통한 인터넷 청약이 원칙입니다.

구분	일반(기관추천)	다자녀가구	신혼부부	생애최초	노부모부양
청약가능면적	85㎡ 이하	전 주택형	85㎡ 이하	85㎡ 이하 (1인 가구 중 단독세대는 60㎡ 이하만 가능)	전 주택형
세대주 여부	세대원 및 세대주 모두 가능			세대주	
청약통장 가입조건	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및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 이상 (국가유공자, 장애인 제외)			청약 1순위 자격 요건 충족(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) 및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 이상	
청약자격	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	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인 자 (태아포함)	① 혼인기간 7년 이내 (혼인신고일 기준, 재혼 포함) ② 혼인기간 중 주택소유 사실이 없는자	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(세대원 포함) ②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또는 1인가구 ③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	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자
소득요건	없음	① 신생아 우선(15%): 2세 미만 자녀 有 소득 100% [맞벌이 120%] 이하 ② 신생아 일반 (5%): 2세 미만 자녀 有 소득 140% [맞벌이 160%] 이하 ③ 우선공급 (35%): 소득 100% [맞벌이 120%] 이하 ④ 일반공급 (15%): 소득 140% [맞벌이 160%] 이하 ⑤ 추첨공급 (30%): 소득기준 초과 / 자산기준 충족 부동산가액 (3.31억원 이하)	① 신생아 우선(15%): 2세 미만 자녀 有 소득 130% 이하 ② 신생아 일반 (5%): 2세 미만 자녀 有 소득 160% 이하 ③ 우선공급 (35%): 소득 130% 이하 ④ 일반공급 (15%): 소득 160% 이하 ⑤ 추첨공급 (30%): 혼인중이거나 미혼자녀 有: 소득 160% 초과 부동산가액 (3.31억원 이하) 1인 가구: 소득 160% 이하 부동산가액 (3.31억원 이하)	없음	
주택소유여부	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				
청약신청 지역	·원주시 거주자: 해당 지역 청약신청 ·강원특별자치도 거주한 자: 기타지역 청약 신청				
신청 기준	1세대 내 동일한 세대구성원이 각각 중복신청(특별공급+특별공급)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나, 2024.03.25. 시행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음(모집공고 참조)				
접수 방법	청약홈 인터넷 청약 접수 원칙(※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접수 가능)				
예비입주자 선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 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 별 공급세대의 500%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.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,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,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. 				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존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.(단,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 제공자의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)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,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.(미 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) 단,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.(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)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·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. (23.11.10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개정)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. 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) 				